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51
----------	------

발의연월일 : 2016. 12. 22.
발의자 : 정성호 · 박홍근 · 박용진
박찬대 · 김경협 · 김성수
박정 · 최인호 · 김병욱
서영교 · 추혜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2015년 접수된 민사사건 중 조정사건은 1%에 불과하여 제도의 활용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매년 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사건들이 고소 · 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만큼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원행정처장이 조정 사무 처리를 위하여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 나. 조정 절차에서 조정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 다. 조정 절차에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를 준용하여 조정 당사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함(안 제38조).
- 라. 조정 전 처분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을 증액하여 조정 전 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42조).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간이한”을 “조정(調停)”으로,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로 한다.

제2조 중 “조정(調停)”을 “조정”으로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정담당판사가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정센터의 설치) ① 법원행정처장은 효율적인 조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정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중 “조정장(調停長)”을 “조정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을 “제7조제6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정에 따라”를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증거조사”를 “사실조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을 “사실조사를 할”로 한다.

제23조 중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을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권고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를 “직권으로”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 중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제3호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권고결정”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권고결정”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중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 제2항·제3항을”을 “제145조, 제152조 제2항·제3항 및 제163조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중 “3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43조 중 “사실조사, 증거조사”를 “사실조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 마목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권고결정”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 에 관한 분쟁을 <u>간이한</u> 절차에 따라 <u>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u> <u>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u> <u>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조정(調停)</u> ----- ----- <u>당사자의 자주적·자율</u> <u>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u> <u>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u> <u>으로-----.</u>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 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u>조정(調</u> <u>停)</u> 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조정사건) ----- ----- <u>조정</u> -----.
제7조(조정기관)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7조(조정기관) ① ~ ⑤ (현 행 과 같음) ⑥ <u>조정담당판사가 제2항에 따</u> <u>라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u> <u>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u> <u>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u> <u>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u> <u>하여금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u> <u>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u> <u>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u> <u>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u> <u>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제7조의2(조정센터의 설치) ① 법 원행정처장은 효율적인 조정사

	<p><u>무의 처리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u></p> <p><u>② 조정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u></p>
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u>조정장(調停長)</u>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8조(조정위원회) ----- <u>조정장</u> ----- -----.
제10조(조정위원)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u>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u>	제10조(조정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u>제7조제6항에서 정한</u> ---
제11조(조정절차) (생략) <u><신설></u>	제11조(조정절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조정 장소)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19조(조정 장소) ① -----
-----내용, 당사자의 의
사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
-----.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

-----사실조사를 할---
-----.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외한다)-----
-----.

제30조(조정권고결정) -----
-----직권으로-----

<p><u>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u></p>	<p>----- ----- -----할 수 있다.</p>
<p>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u>상당한 이유가 없으면</u>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u>하여야 한다.</u></p>	<p>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 ----- ----- <u>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u>----- ----- -----할 수 있다.</p>
<p>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① ----- ----- ----- -----.</p>
<p>1. · 2. (생략) 3. <u>조정을 같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u></p>	<p>1. · 2. (현행과 같음) 3. <u>조정권고결정</u>----- ----- -----</p>
<p>② (생략)</p> <p>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 ----- -----</p>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 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 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 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 ----- ----- ----- ----- -----.
--	---